

# 『법학논총』 논문 투고 규정

제정: 2006. 3. 18  
개정: 2007. 10. 5  
개정: 2008. 11. 5  
개정: 2012. 12. 20  
개정: 2015. 10. 1

**제1조 (목적)** 이 규정은 단국대학교 부설 법학연구소가 발간하는 『법학논총』에 게재 할 논문의 작성요령 및 게재신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 (투고자격)** ① 다음 각 호의 자는 『법학논총』에 게재할 논문을 투고할 수 있다.

1. 연구소 학술행사에서 논문을 발표한 자 및 법학연구소에서 기고를 청탁한 자
2. 공인된 국내외 대학교의 교원 및 법학 관련 연구소의 연구원
3. 초빙연구원이거나 이었던 자
4. 법률분야의 실무종사자
5. 대학원생으로서 박사학위 수료 이상의 자
6. 기타 편집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자

<개정 2015.10.1.>

② 동일 작성자의 논문을 『법학논총』에 2회 연속하여 게재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 법학연구소가 주최한 학술대회에서 발표된 논문 또는 법학연구소에서 기고를 청탁한 논문은 예외로 한다. <개정 2015.10.1.>

③ 『법학논총』에 게재할 논문은 법학 전문 학술지에 게재될 수준의 법학 관련 연구논문 또는 판례평석이어야 한다. <개정 2015.10.1.>

**제3조 (논문의 제출)** 『법학논총』에 논문을 게재하고자 하는 자는 게재를 희망하는 호에 따라 발행예정일의 30일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.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편집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 <개정 2015.10.1.>

**제4조 (논문의 형식)** ① 논문은 연구논문, 판례논문, 학술발표 등으로 구별하여 작성·제출한다.

② 원고의 표지에는 논문제목(국문 및 영문), 필자 성명(국문 및 영문), 소속과 직위, 학위, 주소, 전화번호(사무실, 자택, 이동전화), 팩스번호 및 이메일주소를 기재하여야 한다.

③ 논문의 분량은 200자 원고지 100매(A4용지 20매) 내외를 원칙으로 하며, 300 매를 초과할 수 없다.

④ 논문의 본문 및 각주의 형식은 별도로 정한 논문발행규정에 따라야 한다.

**제5조 (논문접수)** ① 게재신청 원고의 접수 및 문의에 관한 사항은 편집위원회의 편집 간사가 담당한다. 게재가 결정된 논문에 대해서는 법학연구소장 명의로 논문게재예정확인서를 발급 할 수 있다.

② 접수된 원고가 『법학논총 원고 작성 요령』에 따르지 않은 경우 편집간사는 그 원고의 접수를 취소하거나 원고의 작성자에게 수정하여 재투고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.

<개정 2015.10.1.>

**제6조 (논문게재안내)** 『법학논총』의 마지막 장에는 다음호에 게재할 논문의 투고 및 형식에 대한 안내문을 실는다.

**제7조(저작권)** 채택된 원고의 저작권은 채택과 동시에 단국대학교 부설 법학연구소에 귀속된 것으로 본다.

**제8조(심사료, 게재료)** 『법학논총』에 논문을 게재하고자 하는 자가 원고를 제출할 때 연구소는 소정의 심사료를 부과할 수 있다. 제출된 원고의 게재가 확정된 때에는 연구소는 소정의 게재료를 부과할 수 있다.

<개정 2015.10.1.>

**부칙[2006.3.18]**

이 규정은 2006년 3월 18일부터 시행한다.

**부칙[2007.10.5]**

이 규정은 2007년 10월 5일부터 시행한다.

**부칙[2008.11.5]**

이 규정은 2008년 11월 5일부터 시행한다.

**부칙[2013.1.1]**

이 규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**부칙[2015.10.1]**

이 규정은 2015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# 『법학논총』

## 원고 작성 요령

1. 원고는 논문, 판례 평석, 서평 자료로 구별하여 작성한다.
2. 원고의 분량은 200자 원고지 150매 내외(A4용지 20매)를 원칙으로 한다.
3. 편집용지의 환경설정
  - 한글 프로그램 기본문서 A4
  - 위쪽: 23, 아래쪽: 23, 왼쪽: 28, 오른쪽: 28, 머리말: 11, 꼬리말: 11
4. 글자모양
  - 서체: 신명조, 자간: -5, 장평: 100, 크기: 10
5. 문단모양
  - 왼쪽: 0, 오른쪽: 0, 들여쓰기: 1.8ch, 줄간격: 160, 문단 위: 0, 문단아래: 0, 낱말간격: 0, 정렬방식: 혼합
6. 목차의 순서
  - I ('큰제목'으로 설정)
  - 1. ('중간제목'으로 설정)
  - 1) ('작은제목'으로 설정)
  - (1) ('아주작은제목'으로 설정)
  - i) ('바탕글'로 설정)
7. 각주의 표기
  - 1) 왼쪽 여백 0, 오른쪽 여백 0, 내어쓰기 15.9pt, 줄간격 130, 글꼴 신명조, 글자크기 9
  - 2) 처음 인용할 경우는 각주는 가능한 한 다음과 같이 표기한다.
    - (1) 저서인용: 저자명, 서명, 출판사, 출판연도, 면수
      - ① 한글 및 일본어, 중국어 저서일 경우, 책명을 『 』으로 표시한다.
      - ② 영어 및 독일어 등 서양문헌인 경우, 책명을 이탤릭으로 표시한다.예).홍길동, 『법학개론』, 외대사, 2000, 100면.  
.Gildong Hong, *Constitutional Law*, Law press, 2000, p. 2000.
    - 재인용시: 상계서 / 전계서, 위의 책 / 앞의 책, Ibid./ op. cit
    - (2) 논문집 및 정기간행물: 저자명, 논문제목, 잡지명, 제\*권 제\*호, 출판연도, 면수.
      - ① 논문제목은 “ ” 로 표시한다.예).홍길동, “죄형법정주의”, 『형법연구』, 제2권 제2호(2000.8), 200면.  
Gildong Hong, “A Study od Civil Law”, Hufs Law Reviews, vol. 22, no, 2(2000.8), p. 200.재인용시: 상계논문/전계논문, 위의 논문/앞의 논문, Ibid./op/ cit.,

- (3) 외국문헌: 그 나라의 표준적인 인용방법에 의한다.
- (4) 판결인용은 대법원, 헌법재판소의 양식에 준하여 작성한다.
- 판결 - 대법원 \*\*\*\*. \*\*. \*\* 선고 \*\*도 판결
- 결정 - 대법원 \*\*\*\*. \*\*. \*\* 선고 \*\*누\*\* 결정
- 현재 \*\*\*\*. \*\*. \*\* 선고 \*\*현마\*\* 결정
- 외국판결은 그 나라의 표준적인 방법에 의한다.

#### 8. 저자의 표기

- 논문의 제목 아래에 저자를 표기하고 오른쪽에 \*표를 하여 각주란에 인적사항을 표기한다.
- 공동연구논문의 경우에는 주저자(책임연구자)와 공동저자를 구분하고, 주저자 / 공동저자의 순서로 표기한다.

#### 9. 참고문헌의 표기

- 논문의 본문 뒤에 중요한 참고문헌의 서지사항을 목록으로 첨부하여야 한다.

#### 10. 작성 순서

- |   |
|---|
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논문제목</li> <li>- 저자 이름</li> <li>- 목차(로마자만 표시)</li> <li>- 논문투고일, 논문심사일, 게재확정일</li> <li>- 국문초록(200자 원고지 2매 내외)</li> <li>- 국문주제어(5개 이상)</li> <li>- 본문(I. 1. 1) (1) i) 순서에 의함)</li> <li>- 참고문헌</li> <li>- 영문초록</li> <li>- 영문주제어(5개 이상)</li> </ul> |
|---|